

당성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대구광역시 에
건의토록 하겠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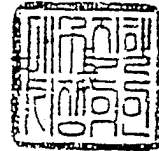
(參 照)

대구직할시 고시 제 1994-~~171~~호
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 제한기준 개정 고시

시민의 건전한 소비생활과 기강확립을 도모하고 「'94 한국방문의 해」를
맞이하여 외국인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
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1994年 1月 31日

大 邱 直 轄



○ 업종별 영업시간

업종		영 업 시 간
후 계 음 식 점		05:00 ~ 24:00
민 반 음 식 점		05:00 ~ 24:00
단 관 주 점		17:00 ~ 24:00
유 흥 주 점		17:00 ~ 24:00
예 의 구 장	관광호텔 무대시설점 식품접객업소	24시간 영업
	관광호텔 무대시설점 유흥주점	17:00 ~ 익일02:00
	무대시설점에서 증전 <u>의극인 전용</u>	17:00 ~ 익일03:00
	대구광역시내의 후계음식점과	24시간 영업
	대구광역시내의 민반음식점, 수월대구금판장, 대구광역시내의 유흥주점	24시간 영업

○ 시행 - 이 고시는 1994. 2. 1부터 시행한다.

○ 폐지 -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대구직할시 고시 제1993-171호는 폐지한다.